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6

2011.12.30.제정 2012.09.21.개정 2018.01.31.개정 2019.07.16.개정 2019.12.10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08.31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8.30.개정 2022.11.24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.)초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구분)** 초빙교원의 직위는 초빙교수, 초빙부교수, 초빙조교수로 구분한다.<개정 2012.05.25, 2012.09.21.>
- 제3조(자격)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9조 및 본교 교원인사 규정 제18조에 의한 교수(교원)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뜻한다.
 - 1. 산업체 등에서 당해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2.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나 당해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 로 인정될 수 있는 자
 - 3. 전문대학교 취업활동 등의 경험 및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<호 신설 2022.11.24.>
 - 4. 전문대학교 입시활동 등의 경험 및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<호 신설 2022.11.24.>
- 제3조의2(정년) 초빙교원의 정년은 「교육공부원법」제47조를 따른다. 단, 학술,문화,예술,행정 분야 등의 뚜렷한 업적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할 경우 만 70세까지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8.31.>

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6

제3조의3(초병교원의 임무) 초빙교원은 학생을 교육·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, 필요한 경우입시 및 취업할동 등을 담당할 수 있다.<조 신설 2022.11.24.>

제4조(임용 계약기간)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6.>

- 1. 삭제 <2019.07.16.>
- 2. 삭제 <2019.07.16.>
- 3. 삭제 <2019.07.16.>
- 4. 삭제 <2012.09.21.>
- 제5조(임용방법 및 절차) ① 초빙교원의 임용방법은 공개채용 또는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 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.
 - ② 초빙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2.09.21.>
 - ③ 제1항 후단의 경우 소속 계열(학과)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[별표1] "초빙교원 신규임용 추천서" 첨부)<개정 2012.09.21.>
 - ④ 초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8.01.31. 2022.02.28., 2022.08.30.>
- 제6조(임용인원의 제한) ① 초빙교원의 임용인원은 겸임교원을 합하여 계열(학과)별 법정 교 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24.>
 - ② 겸임교원을 우선 임용하고 겸임교원 임용이 어려운 여건인 경우 초빙교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7조(승진임용시기) 초빙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재임용 계약 시 동시에 시행하며, 매년 4월 1일자로 연1회 시행한다.
- 제8조(승진소요연수) 직위별 승진 최소 연수는 다음과 같다.
 - 1. 초빙부교수에서 초빙교수: 6년
 - 2. 초빙조교수에서 초빙부교수 : 6년<개정 2021.08.31.>
 - 3. 삭제 <2012.09.21.>
- 제9조(재계약 임용 절차) ① 전 임용기간중의 교수능력이 우수한자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실무지식 등의 계속적인 강의가 필요할 경우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 - ② 재계약 임용 시기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,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 - ③ 총장은 제4조에 의한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실무지식의 계속적인 강의 필요성 여부를 해당 초빙교원의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용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임용여부를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10.>

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6

- ④ 제3항에 의한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서에는 소속 계열(학과)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.([별표2] "초빙교원 재임용 추천서" 첨부)<개정 2012.09.21.>
- ⑤ 제3항의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수) 초빙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6

[별표1] 초빙교원 신규임용 추천서 <신설 2012.09.21>

초빙교원 신규임용 추천서

성	명	한 1	글					한 자						
주민· 번	등록			-		만 서		e-mail			@		,,,	3.5
<u> </u>		주 2	소											·진》 ×4cm〉
연락	ł 처				직장명			_ <3cm×4cm>						
		휴대전	화					직장전화						
		구분 학교명 학과(전공		7)	세브	부전공 기 간			1 간	학위취득일	학위명			
		고교												
학 력		학사												
		석사												
		박사		-1 -1		n -	-1	-11			-1 -1 41		-1-7	-1 -1 61
		기 관 명 재직		47	기간 담당업무			직급 및 직위						
경	력													
추천	선인)과/계열 직급: 성명:												
추천														
의	견													
학 -		성명			(FI)	성대	경				(H)	성명		(FI)
교 협		성명			(FI)	성대	경				Ħ	성명		(FI)

위와 같이 초빙교원 신규임용을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/계열장:

(FI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0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6/6

[별표2] 초빙교원 재임용 추천서<신설 2012.09.21>

초빙교원 재임용 추천서

소 속: 과(계열)

생년월일: . . .(만 세)

성 명:

20**. **. **.

소속 교원 000 인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